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26

발의연월일 : 2026. 4. 6.

발 의 자 : 김정재・최보윤・김선교
김성원・김기현・이달희
박성훈・김은혜・정동만
김승수・박덕흠・최은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자 국가기간산업으로서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대규모의 청정전력 수요와 설비 전환 비용이 수반되며, 특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위치한 철강산업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이 과중하여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다.

제5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 ③ (생 략)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공급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51조(부담금) ① (생 략)	제51조(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

	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